# 영상보안 안심플랜 가입신청서

| 이 용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주민등     | 록번호  |         | _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상 호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소재지     | 주소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업종(담보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)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연 릭     | 처    | T:      | H.P:                  |
| 보험기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효력발생   | 일로부터 1년건         | <u>'</u>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▶ 보험 가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용     |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<br> |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      | 분                |          | D 형     |      | E형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침입강도손해 | 사망·후유            | 50,0     | 000,000 | 50,0 | 00,000  | 이용자 담보 및 고지종업원        |
| □<br>영업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금, 유  | P가증권             | 1,0      | 000,000 | 1,0  | 00,000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산,    | 귀금속              | 5,0      | 000,000 | 10,0 | 00,000  | 자기 부담금 : 30만원(수탁물제외)  |
| <ul><li>② □일반</li><li>⑤ □특수</li></ul> | 침입 보곤  | 산시설파손            | 2,5      | 500,000 | 5,0  | 00,000  | 침입 도난 행위에 의한 파손 담보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추 가  | 선택]              |          | G 형     |      | H 형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화재복-   | 구지원금             | 10,0     | 000,000 | 10,0 | 00,000  | 건물 · 시설 [보상기준표(뒷면)참조]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      | 분                |          | A 형     |      | B 형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침입강도손해 | 사망·후유            | 50,0     | 000,000 | 50,0 | 000,000 | 동거직계가족한정(1인당한도)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현금, 유가증권         | 1,0      | 000,000 | 1,0  | 000,000 |                       |

| [귀중품 목록 / 금액]                 | [강도 손해 담보 종 | 동업원]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:         | (서명) | 주민번호 : |
| 점당 300만원 이상의 귀중품은 고지하여야만 됩니다.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

10,000,000

5,000,000

10,000,000

### **♪** 특기사항

\_\_ 주택

도난담보

- 건설현장, 야적장, 수탁물, 비철(동, 구리, 알미늄)취급소, 천막구조물, 자동차  $\cdot$  오토바이, 동  $\cdot$  식물은 가입불가(담보제외) 합니다.

5,000,000

2,500,000

10,000,000

- 보험가입기간중 가입내용 [사업자, 종업원, 주소 등] 변경이 있을 경우 서면 고지를 근거로 보상합니다.
- 만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담보 할 수 없습니다.

동산, 귀금속

보관시설파손

화재 담보

- 이 신청서는 보험가입을 확인하는 증서의 효력은 없으며, 서비스 중지의 경우 효력이 상실 됩니다.

### ▶ 보험가입과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보안시스템 이용자 본인이 피보험자가 되어 상법731조에 따라 보안서비스 제공자가 제공받는 자의 강도사망 또는 도난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하며, 보안시스템 이용 중단 시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상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 또한,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·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한화손해보험(주)에 제공하여 보험계약 체결, 관리 등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서비스 이용자(피보험자): (서명)

자기 부담금: 10만원

실손보상(목조주택 제외)

침입 도난 행위에 의한 파손 담보

서비스 제공회사(계약자): (날인)



#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

한화손해보험(주) 귀중

###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### ① 최소한의 정보 처리 및 동의거부에 관한 안내

○ 정보동의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·이용 및 제공하며,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 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### ②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

○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### 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□

-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
- 보험계약의 인수심사·체결·유지·관리(부활 및 갱신 포함), 보험금 등 지급·심사, 순보험요율의 산출·검증,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,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보험모집질서 유지
- 수집 · 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- 개인식별정보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성별, 직업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
- 보험계약정보, 피보험자의 상해에 관한 정보,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(사고정 보,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판결문, 증명서, 확인서, 진료기 록 등)
-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- 수집 ·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
### 2.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 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**동의함** □

- 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
- 보험계약정보,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(사고정보 포함), 피보험자의 상해 관련 정보
- 개인(신용)정보 조회목적
- 보험계약의 인수심사·체결·유지·관리(부활 및 갱신 포함), 보험금 등 지급·심사,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조사 포함)
- 조회동의 유효 기간
-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- 조회자(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)의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○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
### 3.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□

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
-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, 법령 상 업무 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
- 보험회사 등 : 손해보험회사, 국내·국외 재보험사
- 업무수탁자 등 : 귀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(설계사·대리점 등), 보험 중개사,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(보험사고조사업 체, 손해사정업체, 의료기관·의사, 변호사, 위탁 콜센타,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등)
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사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
- 공공기관 등 :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
- 보험회사 등 :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,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, 보 험계약 공동인수
- 업무수탁자 등 : 본 계약의 체결 · 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
- 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- 「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」의 정보내용
- 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·이용기간
-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
- ※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[홈페이지 주소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# 4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(상해정보) 및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)를 처 리(수집·이용, 제공 등)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| 상해정보 처리             | 동의함 🗆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주민등록번호 ·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| 동의함 🗆 |

※ 본인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및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상기와 같이 처리함에 동의하며, 상법 제 731조에 따라 보안서비스 이용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서비스이용자(피보험자): (인)

# 영상보안 안심플랜 가입신청서

| 이 용 자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주민등   | 록번호  |    | _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--|
| 상 호 명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소재지   | l주소  |    |                |
| 업종(담보대상) | )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연 릭   | 낚 처  | Т: | H.P:           |
| 보험기간     | 효력발생   | 일로부터 1년긴 | <u> </u> |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|
| ▶ 보험 가입  | 내용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|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구      | 분        |          | D 형   |      | E형 | 비고             |
|          | 치이가도소해 | 사마. ㅎㅇ   | 50.00    | 00000 | 50.0 |    | 이요자 다비 및 고지조어위 |

| 포임 기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네ㅎ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   | 분        | ☐ D 형      | □ E 형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침입강도손해  | 사망·후유    | 50,000,000 | 50,000,000              | 이용자 담보 및 고지종업원            |
| □<br>영업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금, 유   | P가증권     | 1,000,000  | 1,0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산,   | 귀금속      | 5,000,000  | 10,000,000              | 자기 부담금 : 30만원(수탁물제외)      |
| <ul><li>② □일반</li><li>⑤ □특수</li></ul> | 침입 보곤   | ·시설파손    | 2,500,000  | 5,000,000               | 침입 도난 행위에 의한 파손 담보        |
| □ ¬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추 가   | 선택]      | ☐ G 형      | ☐ H 형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화재복-  | 구지원금     | 10,000,000 | 10,000,000              | 건물·시설 [보상기준표(뒷면)참조]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–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 </u>  | 분        | □ A 형      | ☐ B 형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침입강도손해  | 사망·후유    | 50,000,000 | 50,000,000              | 동거직계가족한정(1인당한도)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현금, 유가증권 | 1,000,000  | 1,000,000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도난담보  | 동산, 귀금속  | 5,000,000  | 10,000,000              | 자기 부담금 : 10만원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보관시설파손   | 2,500,000  | 5,000,000               | 침입 도난 행위에 의한 파손 담보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화재  | 담보       | 10,000,000 | 10,000,000              | 실손보상(목조주택 제외)             |
| [귀중품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<br>- |          |            | <b>[강도 손해 담보</b><br>성명: | <b>종업원]</b><br>(서명) 주민번호: |
| 점당 30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</u><br>만원 이상의 귀   | 중품은 고지하( | 여야만 됩니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**♪** 특기사항

- 건설현장, 야적장, 수탁물, 비철(동, 구리, 알미늄)취급소, 천막구조물, 자동차·오토바이, 동·식물은 가입불가(담보제외) 합니다.
- 보험가입기간중 가입내용 [사업자, 종업원, 주소 등] 변경이 있을 경우 서면 고지를 근거로 보상합니다.
- 만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담보 할 수 없습니다.
- 이 신청서는 보험가입을 확인하는 증서의 효력은 없으며, 서비스 중지의 경우 효력이 상실 됩니다.

### ▶ 보험가입과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보안시스템 이용자 본인이 피보험자가 되어 상법731조에 따라 보안서비스 제공자가 제공받는 자의 강도사망 또는 도난손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하며, 보안시스템 이용 중단 시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상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 또한,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·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한화손해보험(주)에 제공하여 보험계약 체결, 관 리 등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> 년 월 20

> > 서비스 이용자(피보험자): (서명)

서비스 제공회사(계약자): (날인)



## 영상보안 안심플랜 요약약관

### ■ 침입강도손해

### [보상하는 손해]

-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도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② 상해에는 강도의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,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.
- ③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. \*형법 제337조~제339조
- ④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,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.

### [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]

- 1. 피보험자의 가족, 친족, 고용인, 동거인, 숙박인 또는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
- 2. 전쟁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 해
- 3. 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 손해
- 4.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
- 5. 피보험자의 의수, 의족,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
- 6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
- 7. 핵연료 물질(사용된 연료를 포함)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(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)의 방사성,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
- 8. 제7호.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
  - \*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만 15세미만자, 심신 상실자,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.

### ■ 화재손해 -[영업소] 화재복구지원금

- 보험에 가입한 물건(건물·시설)이 화재(벼락을 포함)로 입은 아래의 손해에 대해 산출된 실손해액을 【실손해액 대비 화재복구 지원금】에 따라 화재복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- 1. 화재사고에 따른 직접손해
- 2.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손해

### [화재복구 지원금 보상 기준]

| 실 손 해 액                 | 화재복구 지원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300만원 미만                | _        |
| 300만원 이상 ~ 500만원 미만     | 100 만원   |
| 500만원 이상 ~ 1,000만원 미만   | 300 만원   |
| 1,000만원 이상 ~ 1,500만원 미만 | 600 만원   |
| 1,500만원 이상 ~ 2,000만원 미만 | 800 만원   |
| 2,000만원 이상              | 1,000 만원 |

### ■ 도난손해 [동산담보]

### [보상하는 손해]

-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(이하「보험의 목적」이라 합니다) 이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,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(훼 손,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)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- 1. 가재 일체와 집기비품을 포함한 모든 동산
- 2. 귀금속, 보옥, 보석 및 고지된 귀중품

- 3. 글, 그림, 골동품,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
-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침입자, 절도 또는 강도가 보험의 목적을 훔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시 설(건물, 금고 및 도난방지시설 포함)을 파손하는 경우 도난손해조항 에서 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50% 한도내에서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 다. 다만 도난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
### [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]

- 1. 계약자, 피보험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)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
- 2. 피보험자의 가족, 친족, 피고용인, 동거인, 숙박인, 감수인 또는 당직 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
- 3. 지진, 분화, 풍수해,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
- 4. 화재,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
- 5. 절도,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
- 6. 상점, 영업소, 창고 또는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좀도둑으로 인한 손해
- 7. 재고 조사시 발견된 손해
- 8.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
- 9. 자동차, 오토바이, 동물, 식물에 발생한 손해 및 수탁물 손해
- 10.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
- 11.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
- 12.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
- 13. 상점, 영업소,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,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발품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

### ■ 도난손해 [현금 및 유가증권담보]

### [보상하는 손해]

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현금 및 유가증권(보험의 목적)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, 절 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(훼손,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합니다. 이하 "도난손해"라 합니다)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### [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]

- 1. 계약자, 피보험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)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
- 2. 피보험자의 가족, 친족, 피고용인, 동거인, 숙박인, 감수인 또는 당직 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하에 생긴 도난손해
- 3. 지진, 분화, 풍수해,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
- 4. 화재,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
- 5. 절도,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
- 6. 상점, 영업소, 창고 또는 작업장내에서 일어난 좀도둑으로 인한 손해
- 7. 시재조사시 발견된 손해
- 8. 망실 또는 분실 손해
- 9.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
- 10.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
- 11.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
- 12.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



# 🕢 한화손해보험

# 시큐리티플러스보험 적용 조건 확인

| 가입불가물건<br>(보상 제외) | - 야적장, 천막구조물, 목조건물, 비닐하우스.<br>- 동물·식물(산삼포함), 자동차, 오토바이.<br>- 개인소지품(핸드백,지갑 등), 에어컨실외기, 미시건 상태로 자리비움 및 좀도둑사고 → <b>보상불가</b><br>- 수탁물(맡겨놓은 물건-세탁소,골프장의 락커룸 등)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강도상해              | - 주택 : 직계동거가족 한정 담보 / 주택내사고 담보<br>- 영업소: 가입자 본인 담보 및 <mark>서면 고지된</mark> 종업원 담보<br>-사망의 경우 현행법상,, 만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는 보험사고로 담보 할 수 없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귀중품 / 동산          | - 귀중품: 점당 300만원 이상은 서면고지 / 동산: 증빙자료를 근거로 한도내 실손보상   |  |
| 화재 손해             | - 주 택: 한도내 실손 보상, 일반화재보험 적용 (타보험 중복가입 및 보험가액에 따라 비례보상 될 수 있음)<br>- 영업소: 화재복구지원금 - 건물. 시설 실손해액 기준 적용 / 보상기준-요약약관의 보상기준표 참조.  |  |
| 현금/유가증권           | - 시건장치가 있는 시설에 보관해야 함.<br>- 영업소: 피해내역을 확인/증빙 할 수 있는 적절한 입.출 장부 등을 비치 관리.  |  |
| 보관시설파손            | - 도난행위에 의해 파손된 시설 (건물, 금고, 시건장치 등) 담보   |  |
| 기타 확인             | ◈ 경비시스템 미작동 상태로 72시간이상 부재중 및 미시건(창문포함) 사고는 보상안됨.<br>◈ 경비이용자의 대표자, 업종, 주소, 종업원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서면고지 담보<br>◈ 도난사고 발생시 <mark>경찰서신고</mark> (도난사고 사실확인원 발급) 및 <mark>현장사진</mark> 필수 |  |



